

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
조업자제해역의 범위(제2조제4항 관련)

1. 동해 조업자제해역: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

- 가. 북위 38도 37분 09.82초, 동경 132도 59분 38.44초
- 나. 북위 38도 53분 09.71초, 동경 133도 02분 50.41초
- 다. 북위 39도 29분 09.48초, 동경 133도 26분 50.24초
- 라. 북위 39도 51분 54.35초, 동경 134도 11분 19.97초

2. 서해 조업자제해역: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

- 가. 북위 37도 00분 10.09초, 동경 123도 59분 53.41초
- 나. 북위 37도 40분 09.97초, 동경 123도 59분 53.41초
- 다. 북위 37도 40분 09.96초, 동경 123도 10분 13.69초
- 라. 북위 37도 20분 10.09초, 동경 123도 02분 53.73초
- 마. 북위 37도 00분 10.23초, 동경 122도 50분 08.81초